

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-534호

**2020년도 코로나19 치료제 · 백신 개발
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**

2020년도 코로나19 치료제 · 백신 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
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
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7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I. 통합공고 개요

- 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“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”를 확인
- 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1. 사업내용

구 분	공고단위 (RFP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대상	과제구성 요건
코로나19 치료제·백신	1-1.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	RFP 참조	1년 이내 (12개월 이내)	산,학,연,병	단독과제
	1-2.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	RFP 참조	1년 이내 (12개월 이내)	산,학,연,병	단독과제

2. 과제유형

- 일반형 과제 :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(주관단독 구성, 공동 구성 모두 가능, 세부 과제로 구분 불가)
 -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
 -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, 참여기업을 포함
- 임상과제에 한함. IND 승인을 받았거나 IND 접수되어 선정 시까지 승인이 예정된 과제
- 보안등급: 본 과제는 일반등급 과제임

3.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2020.08.21.~2021.08.20. (12개월 이내로 마일스톤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)
- 지원규모 : 마일스톤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해당과제의 마일스톤에 따라 지원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(비용에 제한 기준 없음)
- 지원단계 : 임상단계

- **마일스톤** :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,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뜻함. 과제에 따라 복수 마일스톤(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)으로 구성 가능함.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 필수

II. 신청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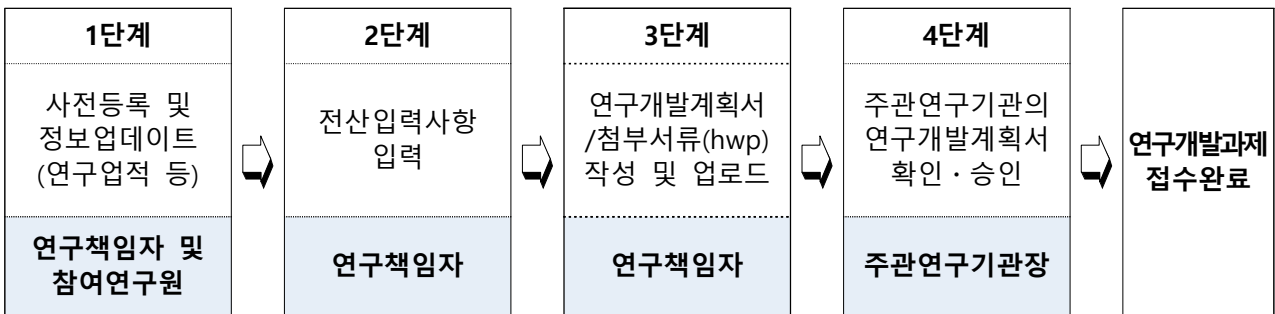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- 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- 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- ※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 - ※ 연구자(연구기관)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 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

□ 제출서류

- ※ 접수 시에 모든 서류는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첨부 문서로 업로드
- ※ 제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미비 시 과제접수 불가
- ※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필수	제출공문 1부	과제 제출 기관의 공문 양식을 이용, 주관연구기관 제출(스캔본)
	연구개발계획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글 및 PDF형식의 파일 - 별첨 양식을 이용, 주관 기관 제출 - 날인된 페이지 반드시 포함 - 치료제 과제는 파일명을 '코로나19치료제_주관연구기관명(책임자명)'으로 입력 - 백신 과제는 파일명을 '코로나19백신_주관연구기관명(책임자명)'으로 입력
	법인등기부등본	최근 3개월 이내 발급, 주관연구기관만 제출
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	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날인 및 서명된 문서의 스캔본, 주관연구기관만 제출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	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	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서명된 문서의 스캔본, 주관연구기관만 제출
해당시	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약서	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(날인 및 서명된 문서의 스캔본)
	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	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(스캔본)
	주관연구기관 소개자료	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
	임상시험 관련 주관연구기관장 확약서 1부	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(날인 및 서명된 문서의 스캔본) *임상시험센터가 아닌 주관연구기관의 확약서임
	임상시험비 내역서 1부	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(날인 및 서명된 문서의 스캔본)

□ 서류제출기한

※ 공고단위(RFP)별 신청마감시간(18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
공고단위 (RFP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시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시
1-1.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1-2.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	2020. 8. 5(수) 18 : 00	2020. 8. 5(수) 18 : 00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
※ 관련규정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 → 관련법규에서 확인

V. 기타

□ 참여기업 부담금

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로, 해당 RFP 기준임

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○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항목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	부담액의 15% 이상		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	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	현물 부담액의 50% 이내	현물 부담액의 70% 이내	-
	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, 기술도입비	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	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	-

※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% 이상으로 함

※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
-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 채용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
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
- 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
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)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’을 작성·첨부하여 ‘과제평가단’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※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(www.mohw.go.kr)
- 전문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www.htdream.kr)

○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

구 분	접수 · 사업내용(RFP) 안내		평가일정/절차 안내	
	담당자	연락처	담당자	연락처
1-1.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1-2.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	홍현석 covid19@kddf .org	02) 6379-3075	노경아 covid19@kddf .org	02) 6379-3076